

의안번호	제540호
의결 연월일	2017년 월 일

『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』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 (환경정책과장)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『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』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540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(환경정책과장)

1. 제안이유

- 가. 녹색제품의 정보제공, 교육·홍보 등으로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'녹색구매지원센터' 운영 필요
- 나. 「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」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 제4조에 따라 “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 간 : 2년(2017년 ~ 2018년)
- 나. 위 치 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, 601호
- 다. 공간규모 : 165 m² 정도
- 라. 위 탁 비 : 연 2억원(국비 1억, 도비 1억)
- 마 수탁기관 : 생태교육연구소'터'
- 바. 위탁사무
 - 녹색제품 정보제공
 - 녹색제품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
 -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
 -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
 -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: 붙임
- 나. 관계 법령



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계획

2017



바이오환경국
환경정책과

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계획

- 녹색제품의 정보제공, 교육·홍보 등으로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·운영 필요
- 「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」 위탁기간 만료에(2016.12.31.) 따라 재계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

개 요

○ 추진근거
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
-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
-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 제28조

○ 센터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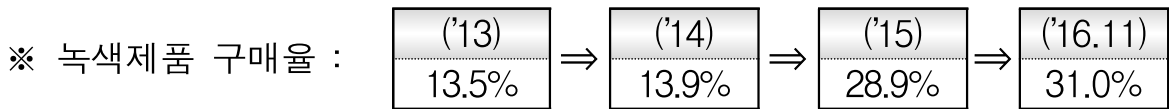
- 위 치 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, 601호
 - 운 영 : 생태교육연구소 “터” 에 위탁 운영(근무인원 : 6명)
 - 예산지원 : 연 2억원(국비 1, 도비 1) / 인건비 40%, 운영비 60%
- ※ 전국적으로 우리 도 포함 5개 시·도에서 운영중

○ 위탁사무

- 녹색제품 정보제공
- 녹색제품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
-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
-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
-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

○ 필요성

- '14. 8월부터 3년 여간 운영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에 기여.
-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율이 포함되어 있어 “가” 등급 달성에 기여



II 추진 사항

- '14. 3.18.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“터” 선정(공모)
- '14. 8.27.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
- '14. 8.27. ~ '16.12.31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
- '16.12. 5. : '17년 국비 지원 총괄위원회 평가 실시(환경부)
 - ※ 3년간 운영실적 총괄위원회 평가를 통해 국비지원 결정(향후 1년 단위 평가)
- '16.12.13. : 국비(1억) 지원 확정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결정
- '16.12.19. ~ '17. 1. 6.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이전 설치
- '16.12.21. : 재계약을 위한 서면심의(재계약 의결)
 - ※ 업무의 전문성·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위탁업체인 ‘터’를 우선 평가
- '16.12.26.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사무의 위·수탁 협약

III 소요 예산

- 사업명 :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
- 사업비 : 연 200,000천원(국비 100,000천원, 도비 100,000천원)
 - ※ 매년 12월 초 1월~11월 까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연 국비지원 결정

IV 향후 계획

-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: '17. 1

관련법령 발취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5조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**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**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**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**<개정 2015. 3. 27>
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③ **도지사는**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**자치사무를 민간위탁**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**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**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<신설 2015. 3. 27>

제5조(예산의 지원) **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**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**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.**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 제8조

제8조(위탁기간)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재계약 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8. 2, 2015. 3. 27>

② 제1항에 따라 **재계약**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**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**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

제17조의3(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**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**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·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녹색구매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**할 수 있다.

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(환경부, 2016. 3. 4.)

제28조(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)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이나 축소, 지원센터 위탁기관 변경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